

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I

외부감사 대상 및 선임절차를 중심으로

2022.04.
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

목 차

I. 외부감사법의 개요

II. 외부감사 대상 회사

1. 외부감사 대상 회사
2.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와 유한회사

III. 감사인 선임 제도

1.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
2. 선임절차
3. 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
4. 외부감사인의 선정
5. 감사인 선임 보고
6. 사후 평가

IV. 기타 제도

외부감사란?

외부감사 정의

○ 회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**독립된 외부 감사인**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

- 불이행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

* 외감대상 회사가 아닌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외감법상 외부감사가 아닌 임의감사에 해당

관련 법령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, 동 시행령, 동 시행규칙

○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(금융위원회 고시), 동 시행세칙 (금융감독원장 세칙)

Ⅱ. 외부감사 대상 회사

1. 외부감사 대상 회사 ①

- 주권상장법인
- 상장예정법인(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)
-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(아래 구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

구 분	주식회사	유한회사
(1) 자산총액	500억원 이상(직전 사업연도 말)	
(2) 매출액	500억원 이상(직전 사업연도,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)	
(3) 복수 기준 해당	(직전 사업연도말 2가지 이상 해당)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	(직전 사업연도말 3가지 이상 해당)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

Ⅱ. 외부감사 대상 회사

1. 외부감사 대상 회사 ②

구 분	사 례	요건해당 여부	외감여부
주식회사 (유한회사)	자산 119억원, 부채 69억원, 매출액 500억원 , 종업원 99명, (사원 49명)	매출액 500억원 이상	외감대상
유한회사	자산 120억원 , 부채 70억원 , 매출액 99억원, 종업원 99명, 사원 49명	5가지 기준 중 2개(자산, 부채) 에 해당	비외감대상
주식회사	자산 120억원 , 부채 70억원 , 매출액 99억원, 종업원 99명	4가지 기준 중 2개(자산, 부채) 에 해당	외감대상
주식회사	자산 119억원, 부채 70억원 , 매출액 99억원, 종업원 99명	4가지 기준 중 1개(부채) 에 해당	비외감대상

Ⅱ. 외부감사 대상 회사

2.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

판단 시점

- 직전 사업연도말* 개별(별도)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

* 예) 2022년도 외감대상 판단은 2021년말 개별(별도) 재무제표로 판단

종업원

-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은 제외)

사원(유한회사)

- 출자좌수에 따른 지분을 가지는 자로서 **유한회사의 정관**에 기재되는 자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1.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

선임 기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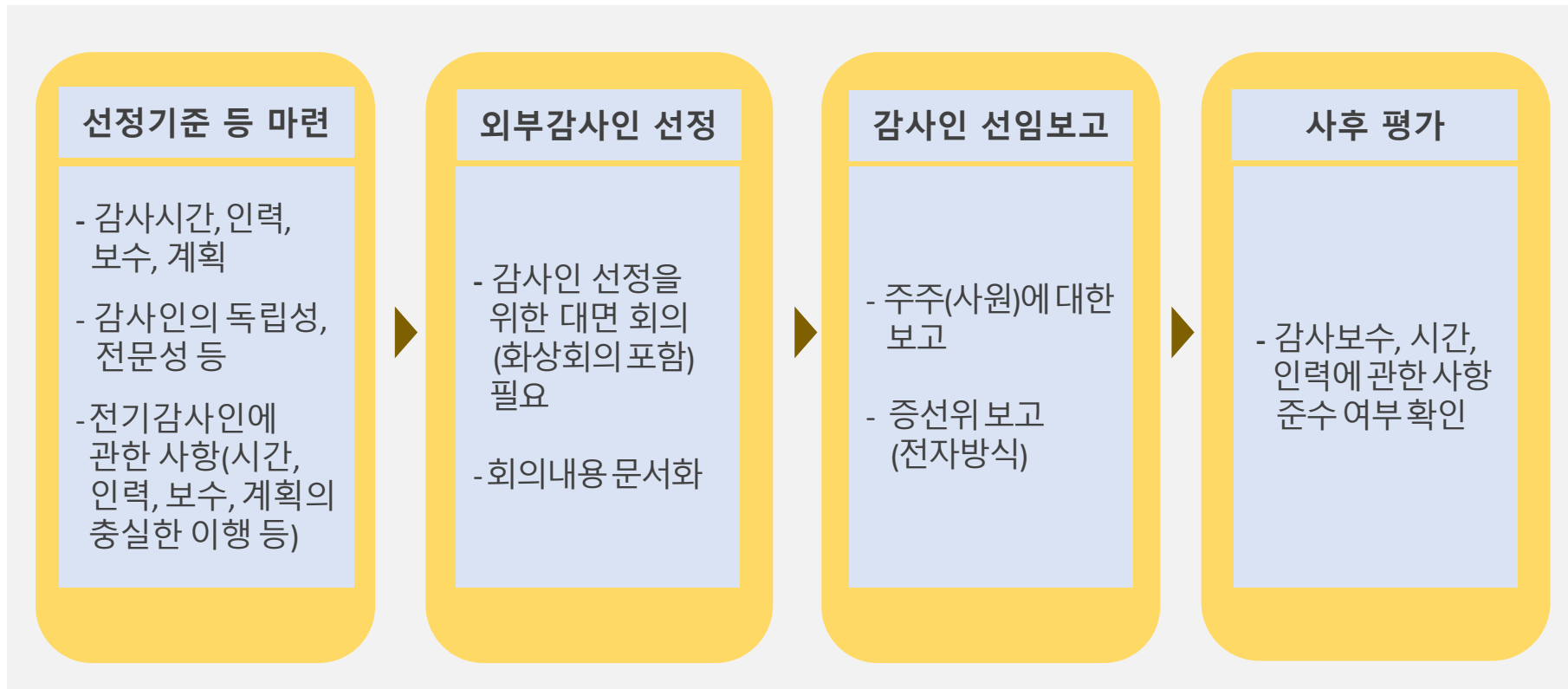
-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(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)
- 다만 직전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(초도감사)는 4개월 이내
 - 선임기간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는 외감법(§11①2호)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

계약 기간

-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(전기말 자산 1천억원 이상), 금융회사
 -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
- 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, 유한회사
 -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2. 선임절차

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3. 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

기준 및 절차 마련

○ 감사, 감사위원회*는 **감사인 선정 전에 미리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****를 마련

*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주식회사,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: 대표이사가 마련

** 감사인 선임에 감사인선임위원회, 사원총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승인이 요구됨

마련 사항

- **감사시간·인력·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**
- **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**
- **전기감사인에 관한 사항**
 - 감사시간·인력·보수·계획의 충실한 이행 등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4. 외부감사인의 선정 ①

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

- (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) **감사위원회**가 선정
- (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) **감사인선임위원회***의 승인을 받아 **감사가 선정**

* Ⅲ - 4.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-감사인선임위원회 참고

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(개별·별도 재무제표 기준 전기말 자산 1천억원 미만)

- **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**가 외부감사인을 선정
- **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**(상법:자본금 10억원 미만)에는 **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**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4. 외부감사인의 선정 ②

유한회사

- **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,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가능**
- 다만 **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 회사**는 **사원총회**(대면회의 필요, 다만 영상회의도 가능)의 **승인** 필요

전기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**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**는 상기의 **선정절차 없이 전기감사인**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
 - 다만 **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**이 되는 경우 **선정 절차** 필요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4.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- 감사인선임위원회

감사인선임위원회(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)

구분	내용
구성원수	· 5인 또는 6인
구성원	· 감사 1명 · 사외이사 2명 이내(5인 구성 시 사외이사 1명) ·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 주주의 임직원 1인 · 일반 주주 1인 (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, 임원 등 제외) · 채권액이 가장 많은 1개 금융회사 임직원
외부전문가	· 부득이한 경우* 경영·회계·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 가능 * 질병, 외국거주, 소재불명, 연락두절, 출석거부 등으로 해당 위원 구성 불가
참석	· 재적위원 2/3이상
승인	·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약식감사인 선임위원회	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 동의 시, 위원장 포함 3인으로 구성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4. 외부감사인의 선정 ④ - 감사인선임위원회

위원구성 관련 주요 예외사항

- **주주위원 : 지배주주**(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), 회사의 **임원**인 주주, **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를 제외**하고 의결권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1명
 - 다만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**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 제외**
- 주주, 채권금융회사, 기관투자자 위원이 **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 행사가 불가한 경우**
 - **대리인이 불출석 사유 및 대리인 증명서류**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권 행사(단, 전문가위원은 대리행사 불가)
- **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**
 - 회사로부터 **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**으로서 경영·회계·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**전문성**을 갖춘 사람(외부전문가)으로 구성가능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5. 감사인 선임보고 ①

금융감독원 보고

-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(금감원 위탁)에 전자보고*

*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(<http://eacrs.fss.or.kr>),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Ⅱ 참조

주주 등에 보고

-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 또는 통지

- ①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
- ②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
- ③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(감사계약 종료시까지)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5. 감사인 선임보고 ②

감사인 선임보고 시 제출서류

- ❶ 회사가 작성한 선임보고 공문
- ❷ 감사계약서 사본
- 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
- ❹ (위원회 등 승인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) 감사위원회, 감사인선임위원회, 사원총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의사록)
- ❺ (감사인을 변경한 회사의 경우)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*

* 회사는 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기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제출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6. 사후평가

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

-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외부감사 관련 **준수사항***의 이행여부를 확인
 - * 감사인의 감사보수,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
- **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**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의 감사는 상기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 문서를 **감사인선임위원회**에 제출해야 함
(준수여부 확인결과 문서는 차기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시에 일괄제출가능)

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주식회사,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

- **대표이사**가 감사보고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

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①

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기한

- 외감대상회사는 아래의 기한 내에 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

① 개별(별도)재무제표

- 정기총회 개최 6주 전

*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

② 연결재무제표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하는 회사 : 정기총회 개최 4주 전

*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

-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: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

*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

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②

증선위 제출의무

- 주권상장법인· 대형비상장회사· 금융회사는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(같은 날)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
- 아래의 방법으로 전자제출

구 분	제출 방식
상장회사	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(http://filing.krx.co.kr)에 제출
대형비상장회사, 금융회사	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http://eacrs.fss.or.kr)에 제출

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의 제출

증선위 제출의무

- **대형비상장회사**(전기말 자산 1천억원 이상)는 매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「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」을 제출
- **(제출서류)** ❶공문, ❷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, ❸대표이사 변동현황, ❹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, ❺법인등기부등본
- **(안내자료)*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⇒ 업무자료⇒ 회계 ⇒ [외부감사인 선임] ⇒ [외부감사 FAQ] ⇒ “대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” **반드시** 참조
- **(제출처)**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<http://eacrs.fss.or.kr>)에 제출

기타 제도 안내

감사계약의 해지

- 법령상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계약 해지 가능(감사인 임의교체 불가)

감사인 지정제도

- 감사인 미선임 등 법규상 지정 사유에 해당 시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수 있음

감사인 자격제한

-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회계법인만 가능

감사인 등록제도

-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있음

자세한 사항은 '금융감독원 홈페이지-업무자료-회계'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

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

본 강의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
‘업무자료-회계-외부감사인 선임- 외부감사 FAQ’에
게시되어 있습니다